제334회 정례회
2014. 9. 17.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충청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최병윤 의원 외 6명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9월 5일

○ 회부일자 : 2014년 9월 11일

3. 제정이유

○ 우리 사회는 급속한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가족 유형이 핵가족화 됨과 동시에 효(孝) 중심의 미풍양속은 후퇴하고 있음

※ 충북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14.3% ('14. 6. 기준)로 고령사회에 진입함.

○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07.8.3.)·시행되고 있으나,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관심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대에 부합한 효행문화를 장려 촉진하고자 제안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연차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나.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지원 및 교육 담당인력 양성지원(안 제5조)

다.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안 제6조)

라. 효의 날(10. 2) 지정(안 제7조)

마.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민간단체 등의 지원(안 제8조)

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예우·지원(안 제9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의 효(孝) 중심 미풍양속은 후퇴되고 있고, 상위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선언적 법령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관심이 미약한 현 시점에서 도 조례 제정을 통한 효행문화 장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됨.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17개 광역 · 자치시 · 도 중 **충북, 제주**를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제정·시행 중에 있음.

○ 본 조례안은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안 제1조(목적)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을 권장하여 새 시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효’, ‘효행’, ‘부모 등’, ‘경로’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
- 안 제3조는 지역사회에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고 새 시대의 효행문화 장려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
- 안 제4조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계획 수립 시 교육감 및 시장·군수로부터의 의견수렴을 명시함.
- 안 제5조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명시된 기관, 단체에 대하여 효행교육을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효행교육을 담당할 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안 제6조는 부모 등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
- 안 제7조는 도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10월2일을 ‘효의 날’로 지정토록 하였음.
- 안 제8조는 효행 장려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9조는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및 예우·지원의 근거를 명시함.
- 안 제10조는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사업평가 및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음.
- 안 제11조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며, 상위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담당부서(노인장애인과), 도의회 입법팀 및 충청북도 교육청 담당부서(진로인성교육과)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성안된 바, 내용 및 법리적으로 타당함.

- 충청북도 담당부서 의견수렴(노인장애인과-13143, 2014. 8. 14)
- 충청북도의회 입법팀 의견수렴(의회운영전문위원-2097, 2014. 8. 27)
- 충청북도 교육청 담당부서 의견수렴(진로인성교육과-17817, 2014. 8. 28)